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27,237,450	63,817,124
일반회계	2,018,208,823	60,546,265
특별회계	109,028,627	3,270,859
기타특별회계	109,028,627	3,270,859
주택사업특별회계	106,206	3,186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974,455	269,23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98,062	77,94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27,905	18,837
수질개선특별회계	14,322,680	429,680
기반시설특별회계	166,116	4,98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36,878	1,106
지하수특별회계	891,212	26,73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569,813	1,517,09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0,104,958	903,149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630,342	18,9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2023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638,46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